

컬링 국가대표 전담팀 채용 공고

대한컬링연맹에서는 컬링 국가대표 전담팀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I. 채용개요

□ 채용분야

구분	분야	채용인원	주요 업무
국가대표 전담팀	체력 트레이너	2명	국가대표 선수 체력 관리/감독 국가대표 기타 지원 업무 국가대표 선수 컨디셔닝, 스포츠 마사지 등

□ 근로조건

근무형태	근무지역	근무시간	급여
계약직 (2026-2027 국가대표 임기) 승인일 ~2027.5.31.까지	국가대표 훈련지역 및 지원장소	상시 근무제로 겸직 불가 근로자가 수립한 훈련계획에 따라 근무	대한체육회 훈련수당 지급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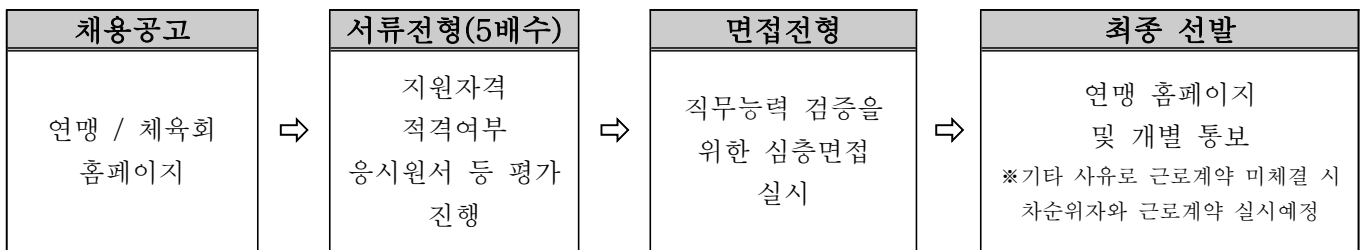
□ 응시자격

구분	응시 자격 및 요건
공통	○ 대한체육회 및 대한컬링연맹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결격사유 미 해당자 ○ <u>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전문스포츠지도자(보디빌딩, 컬링), 스포츠재활트레이너, 선수트레이너, 물리치료사, 건강운동관리사, 스포츠테이핑, 운동처방 자격증</u> * 위 자격증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u>해당 분야 경력 2년이상</u>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단, 채용일 전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가능 ○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국내·외 출장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 우대사항

구분	우 대 내 역
공통	○스포츠 마사지, 테이핑, 컨디셔닝, 물리치료, 트레이너, 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컬링) 등 관련 자격증 다수 소지자

□ 채용 절차



※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서류전형/5배수 선발

구분	평가내용
응시자격 적격여부	■ 제출서류 확인, 적격여부 판정
자기소개서(30)	■ 서류전형 정성평가
직무수행계획서(30)	
경력기술서(30)	
우대사항(10)	■ 평가 기준에 따른 정량평가(자격 및 경력)

○ 면접전형/1배수 선발

구분	평가내용
심층면접 (100)	■ 종합적인 인·적성 및 직무능력 평가 ※업무수행능력, 조직발전 기여도, 전문지식, 차별화된 사고력 및 실행력, 태도 등 ■ 다대다 또는 일대다 면접심사위원 심층면접 진행 ■ 직무수행계획 발표

[서류전형 평가기준/5배수 선발]

구분		배점	비고
응시원서		■ 응시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자기소개서		■ 문항별 성실성·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될 경우 부적합으로 판단되어 서류전형 탈락 처리 - 타인의 자기소개서 활용한 경우 - 회사명을 잘못 기술한 경우 등	30
직무수행계획서		■ 체력분야에 대한 이해도, 업무수행 계획, 경험, 전문성 등 평가	30
경력기술서		■ 지원 직무와 연관된 업무 성과 및 객관적 자료 등 평가	30
자격사항	자격증	■ 스포츠 마사지, 테이핑, 컨디셔닝, 물리치료, 트레이너, 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컬링)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3개 이상	10
		■ 스포츠 마사지, 테이핑, 컨디셔닝, 물리치료, 트레이너, 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컬링)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2개 이상	5
합계		100점	

[면접전형 평가기준/1배수 선발]

구분	내용	배점
업무수행능력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도, 신속·정확도	20점
전문지식	컬링에 대한 전문성,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	30점
직무 적합성	국가대표 선수 및 팀 이해도 관련 업무 문제해결 능력 등	30점
태도 및 성실성	업무에 대한 소양 및 품행, 직업윤리, 성실성 등	20점
합계		100점

○ 최종 합격자 선정

구분	평가내용				
최종 합격자 선발	■ 합격대상: 면접전형 합격자 ■ 선정방법: 서류 면접전형 반영 비율을 종합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 선정				
	<table><tr><th>서류점수 반영비율</th><th>면접점수 반영비율</th></tr><tr><td>40%</td><td>60%</td></tr></table>	서류점수 반영비율	면접점수 반영비율	40%	60%
	서류점수 반영비율	면접점수 반영비율			
	40%	60%			
※동점자 발생 시 처리방법: 면접 → 서류 고득점자 순 선발					
※ 최종점수 합산 70점 미만 불합격 처리					

○ 전형일정(안)

구분	세 부 일 정	비 고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	2026. 7월 4주 중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6. 7. 24.(금) ~ 8. 24.(월) 12:00까지	1개월
서류전형	2026. 8월 4주 중	1차 심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8월 4주 중	
면접전형	2026. 8월 4주 중	2차 심사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	2026. 8월 4주 중	
계약	대한체육회 승인일	

※ 내부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II.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제출

○ 제출서류

구분	내용			비고
개인별 서류	채용 서류	우대사항 자격증	사본 제출	해당자
		경력증명서	발급처: 해당 단체	공통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발급처: 스포츠윤리센터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	
		응시원서	양식참고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건강진단서	채용 신체검사서	합격자

○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제출기한: 2026. 8. 24.(월) 12:00 까지 (이메일 도착시간 기준)
- 이메일: career@koreacurling.org
- 기타문의: 02.419.6281

□ 유의사항

- 지원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전형별 합격자는 유선 또는 문자로 개별통지하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실 경우 채용 종료일로부터 2주 내 담당자 (02-419-6281)에 요청하시면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반환받으실 수 있으며 기일 내 반환신청이 없을 경우 제출하신 서류는 모두 폐기 처리합니다.
-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필수 입력사항의 미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채용 후 수습기간(3개월) 동안 근무평가 후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부규정에 의거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모집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에 허위사실 기재가 발견될 경우 이전 전형 합격이 취소됩니다.
-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재공고 하지 않습니다.
-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적을 경우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하거나,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컬링연맹 02-419-6281로 문의바랍니다.

[채용 결격사유 세부내용]

<대한컬링연맹 사무처운영규정 제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대표 및 트레이너, 경기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연맹,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4.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5.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6.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7.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8.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9.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가. 1천만원 초과와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12.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미만의 자격 정지 또는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징계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예비합격자 : 면접전형 비합격자로 합격기준 충족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운영

- 면접전형 예비합격자 수 : 채용인원의 3배수

□ 전형별 예비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전형 추가합격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부적격 판정,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예비합격자 충원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 채용비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는 타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를 말한다.

□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경우 해당 피해자를 즉시 채용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다음 단계 응시기회를 부여한다.

※(예시)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최종 면접 단계 피해시)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서류 단계 피해시)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불가능하더라도 피해자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한다.

※(예시)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최종 면접 단계 피해시) 피해자 그룹 면접 재 실시

(서류 단계 피해시)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 실시

□ 피해자 구제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 그룹이 특정·확정될 경우 채용비위 관련 부정합격자가 확정·퇴출 전이라도 피해자 구제를 우선 실시한다.